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로 한다

제2조 내지 제5조를 제3조 내지 제6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다.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중 조합원의 90% 이상이 가항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연구조합.
2. "용자기관"이라 함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대상기관을 말한다.
3.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이라 함은 자동화. 정보화. 개발기술사업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구조조정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 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와 중소기업진흥법 제38조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5. "경영안정지원사업" 및 "중소기업운전자금"이라 함은 단기 운전자금의 용자 등 중소기업의 경영안전을 위한 제반 지원을 말한다.
6.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2조에 의거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제4조 제목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제1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앙정부의 예탁금

제5조 제목을 "기금의 관리·운용"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하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 관리 및 운용업무를 금융기관 또는 중소기업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조 제2항중 "중소기업구조개선 자금계정(이하 "구조개선자금"이라 한다)" 을 "중소기업구조개선 자금계정(이하 "구조개선자금"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용자계정(이하"구조조정자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예금의 종류를 달리할 수 있다"

제5조의 제5항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금의 용자는 용자기관에 위탁하여 행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내 모든 용자기관에 용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
6.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사업
7. 기타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른 사업

제2장 제6조 내지 제12조를 제7조 내지 제13조로 하고, 제3장 제13조 내지 제15조를 제14조 내지 제16조로 한다

제4장을 제5장으로 하고 제4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의 관리·운용

제16조 내지 17조를 제22조 내지 제23조로 하고 제18조 내지 제19조를 삭제하며 제20조 내지 제21조를 제26조 내지 제27조로 한다

제17조 내지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용자대상) ①기금의 용자대상은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용자대상업체 선정을 위하여 용자선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과 본사·주사무소와 사업장을 충청북도에 두고 있는 자는 용자대상 선정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18조(용자계획의 공고) 용자계획의 공고에 관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9조(추가용자) 추가용자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를 준용한다.

제20조(용자절차 및 용자조건 등) 도지사는 기금의 용자절차, 용자대상, 선정기준, 용자조건 등 용자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용자금의 상환)용자금의 상환조건, 상환지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도지사와 용자기관은 용자금을 승인 사업목적외에 사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용자금의 반환등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 내지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등)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또는 중진공은 용자상환 및 기타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매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 중진공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및 중진공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담당과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하고, 담당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 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